

출어등록증			
등록번호			선명
어선번호			총톤수
조업 업종			어업허가번호 (어업·양식업 면허번호)
구분	성명 (법인의 명칭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주소
어선 소유자			
선장			
기관장			
통신장			

위와 같이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해양경찰서

직인

○○파출소(출장소) 장

유의사항

1.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2. 이 증서를 분실하면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3.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.

4.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